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사사건 수사·공보시 인권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43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5
1. 입법배경	5
2. 주요내용	8
3. 총괄적 검토	12
가. 법체계적 관점에서 ‘수사’와 ‘공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의 적합 성 검토 필요	12
나. 수사 준수사항 관련 「형사소송법」 외에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 검 토 필요	13
다. 「형사소송법」과의 중복 및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 방식 검토 필요	15
라. 형사사건 공보시 준수사항에 대한 별도 입법 가능성 검토 필요	19

4. 주요 조문별 검토	22
가. 총칙(제1장)	22
(1) 목적(안 제1조)	22
(2) 적용범위(안 제4조)	23
나. 수사에서의 인권보호(제2장)	25
(1) 수사권 남용 금지(안 제7조)	25
(2) 가혹행위 금지(안 제8조 및 제64조)	28
(3) 수사과정 기록(안 제12조)	31
(4) 구속 유지·연장의 제한(안 제18조)	33
(5) 심야조사 제한(안 제32조)	36
(6) 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안 제39조)	40
다. 공보에서의 인권보호(제3장)	44
(1) 형사사건 공개 제한(안 제43조) 및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안 제48조)	44
(2)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의 정의(안 제47조제1항)	46
(3)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 공보의 예외적 허용 요건(안 제47조제2항)	48
라. 보칙(제4장) 및 벌칙(제5장)	55
(1) 국가배상의 특례(안 제62조)	55
(2) 형사사건 보도 등에 관한 특칙(안 제63조)	58
(3)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조항(안 제66조)	6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철현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9. 4.
3. 회 부 일 : 2024.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경찰 수사 중 유명을 달리한 배우 이선균씨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수사·공보 관련 인권 침해 방지 의무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통일된 법률의 부재로 사건관계인은 수사기관에게 기본권 보장·침해 방지를 요구하기 어렵고, 형사사건 수사 자체의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침.

이에 각 수사기관별로 산재된 형사사건 수사·공보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관련 규정들을 법률로 통합하여, 형사사건의 수사과 공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범죄혐의와 무관한 사

생활의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벌칙으로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하고자 함.

이는 수사·공보 중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형사사건 수사의 적법절차원칙 준수에 이바지하고, 형사사건 수사가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의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적정한 법률 적용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2조).

다. 수사는 그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합리적 근거 없는 별개 사건 수사 등 수사권 남용을 금지하고, 수사담당자의 가혹행위, 진술 강요 및 진술을 얻기 위한 부당한 이익이나 편의 등의 제공 등을 금지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마. 수사·공보 담당자가 수사·공보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
는 것을 금지함(안 제10조 및 제46조)
- 바. 불기소처분한 형사사건 등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
개할 수 없도록 하고,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은 국민의 알권리 보
장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되, 실명 공개를 제한
하고 재판에 의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하도록 함
(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 사. 공개가 제한되는 형사사건의 정보라도 오보나 추측성 보도 등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의 오보나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하여
공보담당자등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등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
47조 및 제56조).
- 아.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및 장소 등 수사를 위한 출석 정보에 대
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2조).
- 자. 수사·공보의 담당자를 지휘 또는 보조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수사·
공보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준용함(안 제57조).
- 차.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하여 각 수사
기관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보호관이 법 위반행위 등을 점검하
도록 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고발·징계 등 조치를 의무화함(안 제

58조 및 제59조).

카. 수사·공보 담당자 등의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수사·공보담당자 등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60조).

타. 수사·공보 중에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거나 유출된 경우 국가는 그 공개나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공개,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62조).

파. 형사사건을 보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됨을 전제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판결확정 전 형사사건을 다룰 때에는 해당 사건이 판결확정 전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을 포함하는 외에 그 관점과 분량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공보와 사건관계인의 입장이 균형을 갖추므로써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3조).

하. 수사·공보 과정에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을 폭행·협박한 경우,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을 받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편의 등을 제공한 경우, 공개·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를 공개 또는 유출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입법배경

수사는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일련의 활동¹⁾으로써,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임. 다만, 수사는 특성상 필연적으로 강제처분 등 침익적 성격의 조치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도 중요한 고려 사항임.

또한, 수사기관의 형사사건 공보는 특정 개인의 범죄혐의가 범죄 확정 전 대중에 공개될 경우, 최종 유죄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자의 인격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기관의 공보활동과 달리 일정 부분 제한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이 형사사건 수사 절차 전반을 규정하는 것 외에는, 사건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별도 규정이나 법률은 부재한 상황임. 검찰과 경찰 등 각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²⁾,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과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³⁾ 「형사사건의 공보

1) 이재상·조균석·이창운, 「형사소송법(제15판)」, 박영사, 2023, p.49

2) 이하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수사준칙규정”으로 약칭함.

3) 이하에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경찰수사인권규칙”으로 약칭함.

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4,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공수처훈령) 등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1] 형사사건 수사 및 공보시 인권보호 관련 규정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수사준칙규정 (대통령령)	목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
	주요 조항	·수사의 기본원칙(제3조) ·인권침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제4조) ·형사사건의 공개금지(제5조)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시 유의사항(제10조) 등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목적	수사과정에서 <u>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u>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
	주요 조항	·인권보호의 책무(제2조) ·가혹행위 등의 금지(제3조) ·차별의 금지(제4조)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제7조) ·인권교육의 실시(제11조) 등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목적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 조항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제2조) ·심야조사 제한(제36조) ·장시간 조사 제한(제37조) ·신뢰관계인 동석(제38조) 등
경찰수사인권규칙 (경찰청훈령)	목적	경찰관이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u>조사 및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u>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
	주요 조항	·인권보호 원칙(제2조) ·가혹행위 등 금지(제3조) ·자백강요 금지(제4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제6조) ·차별금지 및 사회적약자 보호(제7조) ·심야조사 제한(제9조), 장시간 조사 제한(제10조) 등

4) 이하에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형사공보규정”으로 약칭함.

5) 이하에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경찰공보규칙”으로 약칭함.

구 분	주요 내용	
형사공보규정 (법무부훈령)	목적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주요 조항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제4조) ·공개금지정보(제7조) ·실명 공개 금지(제8조)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제9조) ·전문공보관(제13조) ·공보의 방식(제15조) ·초상권 보호조치(제21조) 등
경찰공보규칙 (경찰청훈령)	목적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조항	·수사사건등의 공개금지 원칙(제4조) ·예외적인 공개(제5조) ·공보 제한 사항(제6조) ·공보책임자(제9조) ·공보시 유의사항(제13조) ·초상권 보호(제14조) 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공수처훈령)	목적	공수처 담당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공보의 기준 등을 규정함
	주요 조항	·수사종결 전 사건의 공보 금지(제4조) ·공소제기 사건의 공보(제5조) ·수사종결 전 사건의 예외적 공보(제8조) ·예외적 실명공개(제12조) 등

이처럼 형사사건 수사 및 공보에 대해 각 수사기관별로 규정할 경우 사건관계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통일적 법적용이 곤란하고, 법무부 훈령과 경찰청훈령 등은 국가기관의 내부 규율에 불과함. 이에 따라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초상권 등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바, 수사·공보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령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각 수사기관이 하위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수사·공보에서의 인권 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형사소송법」과는 독립된 별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

2. 주요내용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수사준칙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경찰수사규칙, 경찰수사인권규칙, 형사공보규정, 경찰공보규칙(이상 [표 1] 참조)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사사건 수사 및 공보와 관련된 규정을 취합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제정안은 크게 5개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은 총칙으로써 제정안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책무, 법률의 적용범위 및 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제2장과 제3장은 각각 ‘수사에서의 인권보호’와 ‘공보에서의 인권보호’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6개의 절, 제3장은 3개의 절로 다시 세분화하고 있음.

제4장과 제5장은 각각 보칙과 벌칙을 규정함. 보칙에는 인권보호관

설치(안 제58조 및 제59조), 인권교육 실시(안 제61조), 국가배상 특례(안 제62조), 형사사건 보도 등에 관한 특칙(안 제63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에는 수사담당자등의 가혹 행위 등(제64조), 진술 강요 등(제65조), 수사담당자 및 공보담당자등의 개인정보 유출 등(제66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음.

끝으로,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함.

제정안의 조문 구성 현황, 제2장 및 제3장에 각각 대응하는 현행 법령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음.

[표 2] 제정안의 조문 구성 및 타 법령과의 비교

조문 구성			타 법령 동일·유사조항	
장·절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원칙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사 에서의 인권 보호	제1절 총칙	제6조	임의수사의 원칙	형소법 §199①, 수사준칙규정§10① 인권보호수사규칙§8①·②
		제7조	수사권 남용 금지	형소법 §198④, 수사준칙규정§16②·③ 인권보호수사규칙§13·§14, 경찰수사인권규칙 §12①·③
		제8조	가혹행위 금지	인권보호수사규칙 §3① 경찰수사인권규칙 §3
		제9조	진술 강요 등 금지	형소법 §198④, 인권보호수사규칙 §3②, 경찰수사인권규칙 §4
		제10조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	수사준칙규정§5②, 인권보호수사규칙§7 경찰수사인권규칙§6①·②
		제11조	권리의 고지	
		제12조	수사과정 기록	형소법§244의4

조문 구성				타 법령 동일·유사조항
장·절	조	제목		
	제2절 체포·구속	제13조	체포·구속의 제한	형소법 §198①, 인권보호수사규칙 §18·§19 경찰수사인권규칙 §16
		제14조	영장의 재청구	인권보호수사규칙 §21
		제15조	체포·구속시 고지	형소법§200의5, 수사준칙규정 §32①
		제16조	체포·구속시 준수사항	인권보호수사규칙 §23
		제17조	체포·구속 사실 통지	형소법 §87(§200의6에 따라 수사 절차에 준용) 수사준칙규정 §33①, 인권보호수사규칙 §24①
		제18조	구속 유지·연장의 제한	인권보호수사규칙 §26, §27
	제3절 압수·수색 등	제19조	압수·수색의 제한	형소법 §106(§219에 따라 수사 절차에 준용) 인권보호수사규칙 §29②, §30
		제20조	압수·수색 시 참여의 보장	형소법 §121, §122 경찰수사인권규칙 §21③·④
		제21조	압수·수색 시 준수사항	경찰수사인권규칙 §21①
		제22조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형소법 §106(§219에 따라 수사 절차에 준용) 수사준칙규정 §41①·②
		제23조	신체의 수색·검증	형소법 §124, §141(§219에 따라 수사 절차에 준용) 인권보호수사규칙 §32①·②
		제24조	압수물의 부당사용 금지	인권보호수사규칙 §36, 경찰수사인권규칙 §27
	제4절 피의자 조사	제25조	임의동행	수사준칙규정 §20, 경찰수사인권규칙 §15
		제26조	출석요구	형소법 §200, 수사준칙규정 §19
		제27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형소법 §244의3, 인권보호수사규칙 §38
		제28조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인권보호수사규칙 §39
		제29조	변호인의 참여	형소법 §243의2, §244의3① 인권보호수사규칙 §40
		제30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형소법 §163의2(§221조에서 준용) 인권보호수사규칙 §41
		제31조	피의자 조사 시 준수사항	인권보호수사규칙 §42
		제32조	심야조사 제한	수사준칙규정 §21, 인권보호수사규칙 §45 경찰수사규칙 §36
		제33조	장시간 조사 제한	수사준칙규정 §22, 인권보호수사규칙 §44 경찰수사규칙 §37
		제34조	휴식 부여 등	수사준칙규정 §23, 인권보호수사규칙 §47
	제5절 피해자 조사 등	제35조	피해자의 진술 등 보장	인권보호수사규칙 §49
		제36조	피해자 정보 제공	형소법 §245의6, §259의2 인권보호수사규칙 §50
		제37조	전용조사실	인권보호수사규칙 §53①
		제38조	피해자 조사 시 준수사항	인권보호수사규칙 §51
		제39조	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수사준칙규정 §15, 경찰수사규칙 §80 인권보호수사규칙 §54
		제40조	피해자 등의 조사에 대한 준용	

조문 구성				다 법령 동일·유사조항
장·절		조	제목	
	제6절 조사 대상자에 따른 특례	제41조	장애인의 특례	인권보호수사규칙 §60, 경찰수사인권규칙 §49
		제42조	외국인의 특례	인권보호수사규칙 §61~§62, 경찰수사인권규칙 §48
제3장 공보 에서의 인권 보호	제1절 통칙	제43조	형사사건의 공개 제한	형사공보규정 §4, 경찰공보규칙 §4
		제44조	공보의 원칙	형사공보규정 §3
		제45조	공보담당자	형사공보규정 §13, 경찰공보규칙 §9
		제46조	개인정보 등 유출 금지	
	제2절 공보 절차	제47조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	형사공보규정 §5, §9
		제48조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	형사공보규정 §11
		제49조	공보의 방식	형사공보규정 §15
		제50조	공보 시 유의사항	형사공보규정 §16①·③
		제51조	실명 공개의 제한	형사공보규정 §8·§12, 경찰공보규칙 §7
	제3절 사건관계인 권리 보호	제52조	출석 정보 공개 금지	형사공보규정 §20①, 경찰공보규칙 §15
		제53조	초상권 등의 보호	형사공보규정 §20②·③, 경찰공보규칙 §14·§16
		제54조	피의자의 초상 공개	형사공보규정 §9, 경찰공보규칙 §17
		제55조	언론과의 접촉 제한	형사공보규정 §18·§19, 경찰공보규칙 §19
		제56조	오보 등에 대한 대응	형사공보규정 §26, 경찰공보규칙 §20~§22
제4장 보칙		제57조	수사 및 공보 관계자への 준용	
		제58조	인권보호관	인권보호수사규칙 §69·§70
		제59조	위반행위 점검	인권보호수사규칙 §76, 형사공보규정 §25
		제60조	담당자의 변경	
		제61조	교육의 실시	인권보호수사규칙 §11, 경찰수사인권규칙 §51 형사공보규정 §23, 경찰공보규칙 §24
		제62조	국가배상의 특례	
		제63조	형사사건 보도 등에 관한 특칙	
제5장 벌칙		제64조	가혹행위 등	
		제65조	진술 강요 등	
		제66조	개인정보 유출 등	

3. 총괄적 검토

가. 법체계적 관점에서 ‘수사’와 ‘공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 의 적합성 검토 필요

제정안의 본칙에 해당하는 제2장 및 제3장의 구조를 보면, 제2장에서는 ‘수사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에서는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즉, 제정안은 형사사건의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수사’와 ‘공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임.

수사와 공보 모두 형사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에 의한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고, 형사사건의 수사과정과 이를 국민·언론에 알리는 공보과정 모두 피의자·피고인 및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규정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음.

다만, ‘수사’와 ‘공보’의 개념과 상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규정 방식이 법체계적 관점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사’는 수사기관의 본래적 기능·직무로써,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⁶⁾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음.

반면, ‘공보’는 국가 기관에서 국민에게 각종 활동 사항에 대하여 널

6) 이재상·조균석·이창은, 앞의 책, p.49

리 알리는 것을 의미⁷⁾하므로, 수사기관 뿐만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직무이고, 형사사건의 공보는 넓은 의미의 수사 활동에 포함되거나, 수사 활동의 부수적 절차로 볼 수 있음.

이처럼 ‘수사’와 ‘공보’의 개념적 정의와 관계, 형사사법절차에서 각 행위가 갖는 의미와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이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법체계적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함.

특히, 상이한 두 개념을 함께 규율하는 과정에서 제정안의 목적, 기본 원칙, 적용범위 등 총칙(제1장)의 규정 내용이 일부 명확하지 않거나 해석상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하 총칙 검토에서 상술함).

나. 수사 준수사항 관련 「형사소송법」 외에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 검토 필요

헌법 제12조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헌법 원칙을 형사절차에서 실현하기 위한 법률임.⁸⁾ 즉, 국가형벌권 실현은 필연적으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의를 참고함.

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구체적 형사절차를 법률로 규정(“형사절차법정주의”)함으로써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임.⁹⁾

범죄의 수사는 국가형벌권 행사를 위한 형사절차의 핵심이자 시발점이며, 「형사소송법」도 제2편 제1장에서 82개 조항(제195조부터 제245조의10까지)에 걸쳐 수사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결국 「형사소송법」은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원칙 및 형사절차법정주의를 구현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수사절차를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음.

제정안은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형사소송법」 외에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사행위는 다른 형사절차들과 비교하여 그 특성상 필연적으로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권리침해를 수반하고 침해 수위도 강하다는 점에서, 특별히 별도 법률로 규정하려는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다만, 앞서 살펴본대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제반의 수사절차 관련 규정은, 수사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고, 피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이재상·조균석·이창은, 앞의 책, p.4,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제13판)」, 법문사, 2021.3, p.3

9) 이재상·조균석·이창은, 앞의 책, p.4

특히,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수사 관련 조항 중 사건관계인 등의 인권보호 관련 절차와, 관련되지 않은 절차 규정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헌법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의 영장주의 원칙¹⁰⁾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체포(제200조의2), 구속(제201조), 압수·수색·검증(제215조) 등의 수사 절차에서 영장 요건 및 발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강제수사시 영장청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¹¹⁾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임의적 강제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정안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관련 사항을 「형사소송법」에서 명확히 분리하여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다. 「형사소송법」과의 중복 및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 방식 검토 필요

형사사건 수사에서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제정안 제2장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형사소송법」도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규정하

10)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안 제14조에서 영장의 재청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제14조(영장의 재청구) 검사는 체포·구속 영장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각사유에 따라 보완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야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5조제2항¹²⁾에 따라 위임된 수사준칙규정 및 하위법령이 규정한 내용도 포함됨(9페이지 [표 2] 참조). 그럼에도 제정안은 부칙(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유사 조항들을 삭제하지 않았으며, 제정안과 유사·중복되는 조항을 조정하는 별도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바도 없음.

따라서 제정안대로 입법할 경우, 제정 법률과 「형사소송법」 간 완전히 동일하거나 내용·취지가 유사한 조항이 중첩 규정되는바, 이는 법 체계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제정안 중 수사과정의 녹음·녹화(안 제12조제2항) 등 일부 조항은 같은 수사절차임에도 「형사소송법」과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였는바, 체계정당성 원칙¹³⁾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3]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규정이 동일·유사한 사례

제정안	「형사소송법」	비고
제13조(체포·구속의 제한) ① <u>피의자에 대한</u>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8조(준수사항) ① <u>피의자에 대한</u>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불구속 수사 원칙 동일하게 규정

12)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체계정당성 원칙은 입법자에게 법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그가 선택한 가치기준을 일관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입법자는 특정한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서 선택한 가치기준을 하나의 법률 내부에서 뿐만아니라, 동일한 규율대상을 갖는 다른 법률에서도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함.(서윤호(2016), “입법이론에서의 체계정당성”, 통일인문학 제65집, p.273)

제정안	「형사소송법」	비고
제6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수사는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임의수사의 원칙을 유사하게 규정
제7조(수사권 남용 금지) ② 수사담당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진술 강요 등 금지) ② 수사담당자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사건관계인에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8조(준수사항)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형소법 제198조제4항의 별건수사 금지 조항을 제정안 제7조와 제9조에서 각각 규정
제15조(체포·구속 시 고지) 수사담당자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u>피의사실의 요지</u> 2. <u>체포·구속의 이유</u> 3. <u>변호인을 선임할 권리</u> 4. <u>진술을 거부할 권리</u>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u>피의사실의 요지</u> , 체포의 이유와 <u>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u> 를 주어야 한다.	현행 형소법상 체포시 권리 고지를 제정안 제15조에서 체포·구속시 권리고지로 규정하면서, 진술거부권을 추가로 명시함(현행은 진술거부권 고지는 수사준칙에서 규정)
제20조(압수·수색 시 참여의 보장) ① 수사담당자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우 <u>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u> 다만,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u>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피고인, 변호인 등의 참여를 유사하게 규정

제정안	「형사소송법」	비고
제27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수사담당자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u>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u>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u>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u>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u>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u>	현행 형소법 상 진술거부권 고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제정안은 상세 내용을 상술하지 않음
제29조(변호인의 참여) ① 수사담당자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변호인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참여 유사하게 규정. 단, 제정안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현행은 인권보호 수사규칙에서 규정)

[표 4]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규정이 상호 충돌될 수 있는 사례(영상녹화 관련 규정)

제정안	「형사소송법」	비고
제12조(수사과정 기록) ② 수사담당자는 사건관계인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을 <u>녹음 또는 녹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u>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u>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u>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u>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u>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현행 형소법은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시 영상녹화를 임의규정으로 둔 반면, 제정안은 녹음 또는 녹화를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음.

이처럼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간 유사·중첩되거나 충돌되는 조항의 병존에 따른 법체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① 중첩·충돌되는 각 조항을 비교·검토하여 이를 현행 「형사소송법」에 반영하는 방법(형사소송법 개정 방식), ② 제정안에 반영하되,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들은 폐지하는 방법(별도 법률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 방식) 등의 입법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¹⁴⁾

라. 형사사건 공보시 준수사항에 대한 별도 입법 가능성 검토 필요

제정안 제3장은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사건의 공개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안 제43조), 범죄의 급속한 확산 및 동종 범죄 예방, 범인 검거를 위한 협조, 공공 안전 등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 공보를 허용(안 제47조)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임.

즉, 제정안은 수사기관의 형사사건 ‘피의사실공표’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형해화되고, 피의자의 명예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¹⁵⁾ 빈발 등 피의사실의 무분별한 언론 공표 관행과 피해를 법률로 통제하려는 취지로 보임.

14) 다만, ②의 경우 앞에서 검토한대로 「형사소송법」 외에 수사 준수사항을 정하는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15) 2023년 12월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유명 배우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24년 1월 12일 해당 사건의 무분별한 수사관련 정보 유출 및 경쟁적 언론보도에 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성명이 발표되기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으나,¹⁶⁾ 1953년 제정 이래 단 한 건도 처벌된 사례가 없어¹⁷⁾ 사실상 사문화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법무부훈령인 형사공보규정과 경찰청훈령인 경찰공보규칙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그 예외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데, 해당 법령은 국가기관의 내부 규율임에도 실질적으로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금지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 조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훈령에서 법령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¹⁸⁾

실제, 제정안 제3장의 대부분의 조항은 형사공보규정 및 경찰공보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으며(9페이지 [표 2] 참조), 제5장 벌칙 중 제66조는 수사·공보관계자가 이 법에 따라 공개·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를 공개·유출할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그 규범력을 확보하고 있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오고, 그 통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 행정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피의사실공표의 명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범력을 제고시키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됨.

16)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7) 법제사법위원회,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18) 검토보고」, 2024. 8. p.7

18) 김재현·임정호, 피의사실공표죄의 합리적 적용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2019.9), 113~114면.

다만, 앞서 검토한대로 제정안이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시 준수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병렬적으로 규정하려는 점이나, 수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 외 별도 법률로 제정하려는 점에 대해서는 법체계적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반면, 형사사건 ‘공보’는 ‘수사’와 달리 그 절차를 규정한 별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 중 형사사건 ‘공보’ 사항은 분리하여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⁹⁾

19) 이와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및 생명과 재산 보호 사이의 조화를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및 예외적 공개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18)”이 발의(2024. 6. 12)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4.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제1장)

(1) 목적(안 제1조)

안 제1조에서 제정안은 “형사사건의 수사과 공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법문상 목적 조항은 다시 ① 국민의 인권 보호, ②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간 조화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표 5] 안 제1조 조문대비표

제정안	형사공보규정	경찰공보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과 공보 과정에서 <u>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u>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u>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u> ,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경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u>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u>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 제1조는 주로 형사공보규정, 경찰공보규칙의 목적 조항을 참고하고 있어, 법문상 형사사건의 ‘수사’보다 ‘공보’과정에 보다 집중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음. 제정안은 형사사건의 공보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도 주된 입법 목적이므로, ‘수사’와 ‘공보’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법문을 보완(예시: ‘적법절차 확립’ 등)하거나, 제1조를 두 개의 항(項)으로 구분하여 ‘수사’에서의 인권보호와 ‘공보’에서의 인권보호 목적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 적용범위(안 제4조)

제정안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안 제4조제1항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수사 전 조사와 그 공보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표 6] 안 제4조 조문대비표

제정안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수사 전 조사와 그 공보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1항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는 「형사소송법」, 수사준칙규정 등 기존 법령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를 위한 형사절차²⁰⁾의 일환으로

20) 형사절차는 범죄의 수사, 범인의 검거, 공소의 제기, 공판절차, 유·무죄의 선고, 형의 집행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사행위의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반면, ‘형사사건 공보’의 경우 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형사절차 중 어느 범위까지의 공보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즉, 형사사건 수사활동에 대한 공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수사 이전 내사 단계 및 수사 이후 공소 제기과 재판과정에 대한 공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특히, 제2항에서 수사 전 조사과정과 ‘그 공보’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항의 경우에도 ‘수사와 그 공보(수사활동에 대한 공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음. 이 경우 제정안 제3장 제2절에서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안 제47조)와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안 제48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않게 됨.

이와 관련하여 형사공보규정 제2조²¹⁾는 형사사건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 및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정의함으로써, 해당 훈령의 ‘형사사건 공보’에는 수사활동 뿐만 아니라 수사 전 내사, 종결된 범죄사건,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보까지 모두 포함됨.

따라서 제정안도 형사공보규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목적 조항(제1

구성됨.(신동운, 앞의 책, p.3)

21) 「형사공보규정」 제2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훈령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 및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다만,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훈령이 적용된다.

조) 외에 ‘형사사건’ 용어가 처음 사용되는 제4조에서 ‘형사사건’을 정의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형사사건 공보’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수사에서의 인권보호(제2장)

(1) 수사권 남용 금지(안 제7조)

제정안 제7조는 수사권 남용 금지에 대한 조항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수사담당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해서는 안되고(제7조제2항),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하여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제7조제3항).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인 사건관계인 소환, 사건관계인 가족 및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수사를 금지하고 있음(제7조제4항).

[표 7] 안 제7조 조문대비표

제정안	형사소송법	수사준칙규정
제7조(수사권 남용 금지) ①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하 “수사담당자”라 한다)은 수사의 개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 <u>수사담당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u>수사담당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하여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u>수사담당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관계인을 반복적으로 소환하거나, 사건관계인의 가족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98조(준수사항) ④ 수사기관은 <u>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u>	제16조(수사의 개시)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u>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u>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금지한 안 제7조제2항은 이른바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과 동일하며, 새로운 범죄혐의 확보 목적의 수사기간 지연을 금지한 안 제7조제3항은 수사준칙규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안 제7조제3항 중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는 이른바 ‘표적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²²⁾ 안 제7조 제3항은 ‘표적수사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수사기간 지연’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표적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사 비례의 원칙’²³⁾²⁴⁾에 반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 금지되어야 할 수사행위임. 또한 ‘부당한 수사기간 지연’ 역시 사건관계인으로 하여금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수사를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감내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배제되어야 할 수사행위임.

제정안과 같이 부당한 수사기간 지연이 비단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는(표적수사)’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사건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표적수사 금지’와 ‘부당한 수사기간 지연 금지’를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정당한 지연’과 ‘부당한 지연’의 구별이

22) 이와 관련,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83)」이 발의(2024. 6. 12)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동 개정안에서는 표적수사를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23) 이재상·조균석·이창온, 「형사소송법」(제15판), 박영사, 2023. 8., p.106

2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참조),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지연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7조제4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건관계인과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수사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나 피의자와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특히, 수사 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부분도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라는 수사 대상까지 결합할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발견이나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인물을 적시에 수사하는데 제한 요소로 작용하는 등 수사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법문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가혹행위 금지(안 제8조 및 제64조)

제정안 제8조는 “수사담당자”는 사건관계인에게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안 제64조는 그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안 제64조제1항), 가혹행위로 인한 상해(제2항)나 사망(제3항)시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는 「형법」 제125조의 가중처벌을 규정함.

[표 8] 안 제8조 및 제64조 조문대비표

제정안	현행 규정
제8조(가혹행위 금지) 수사담당자는 사건관계인에게 <u>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64조(가혹행위 등) ① 수사담당자 또는 이를 지휘·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8조를 위반하여 <u>사건관계인에게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u>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u>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u>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u>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u>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u> ②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u>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

제정안이 규정한 가혹행위죄의 행위주체는 ‘수사담당자(안 제7조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를 의미) 또는 이를 지휘·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으로,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의 행위주체인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임.²⁵⁾ 또한 범죄행위의 객체(제정안은 사건관계인, 「형법」의 경우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나 구성요건 행위(제정안은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 「형법」의 경우 폭행 또는 가혹행위) 역시 제정안과 「형법」 제125조가 법문상 차이가 있을 뿐 해석상 동일하다고 판단됨.

즉, 제정안 제8조 및 제64조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와 그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중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가혹행위로 인한 상해·사망의 경우 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는 가중처벌 형량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표 9] 참조)

[표 9] 가혹행위죄에 대한 가중처벌 형량 비교

구분	제정안	형법 및 특가법
기본 형량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상해	3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복수의 법률이 동일하게 수사담당자의 가혹행위죄를 규정하면서, 가중처벌 형량을 달리 정하는 것은 입법 실익 및 법률의 체계적합성에 부

25) 「형법」 제124조·제125조의 행위 주체 중 ‘검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의미하고, 이는 검찰총장 또는 검사 가운데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지 않음. 또한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한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를 의미하며, 그 직무를 보조하는 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는 경사, 경장, 순경을 의미함.(김대휘·김신, 「형법 각칙(제1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0. p.295-296.)

합하지 아니함. 따라서, 제정안의 가혹행위 금지(안 제8조) 및 처벌조항(안 제64조)은 삭제하고, 현행 「형법」 제125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수사과정 기록(안 제12조)

제정안 제12조는 수사담당자는 수사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을 녹음·녹화하고 보존하여야 함을 규정함(제2항).

[표 10] 안 제12조 조문대비표

제정안	「형사소송법」
제12조(수사과정 기록) ① 수사담당자는 수사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사담당자는 사건관계인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녹화 및 보존 등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안 제12조제2항은 수사과정의 녹음·녹화 및 보존을 의무 조항으로 두면서, 그 요건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어느 경우에 수사담당자가 수사과정을 녹음하거나 영상녹화하여야 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예규인 「영상녹화 업

무처리 지침」 제4조는 임의적 영상녹화와 필요적 영상녹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표 11] 참조), 이를 참고하여 제정안에 수사과정 녹음·녹화가 필요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거나, 그 세부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11]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예규)에서 정하는 영상녹화 대상

조항	내 용
제4조	(임의적 영상녹화 대상) 1.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2.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사건 3.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 4.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을 출석조사하는 경우 (필요적 영상녹화 대상) 1. <u>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고소·고발·관련인지 포함)의 피의자를 출석조사하는 경우</u> 2. <u>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u> 3. <u>진술보호가 필요한 조직범죄 사건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u> 4. <u>통역이 필요하거나 영주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u> 5. <u>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u> 6. 피조사자가 영상녹화조사를 요청한 사건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²⁶⁾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 등을 조사할 때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4조의2제1항²⁷⁾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는 임의

26)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27)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조항으로, 의무조항인 제정안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음.

다만, 최근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시 회유·강요 등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로부터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상녹화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바,²⁸⁾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에 반영하거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²⁹⁾

(4) 구속 유지·연장의 제한(안 제18조)

제정안 제18조는 수사담당자는 구속 후 사정변경에 따라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속취소 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항), 계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으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없으며, 구속기간 중이라도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제2항)함. 이는 구속의 강제성을 감안하여 조기에 구속대상자를 석방하려는 등의 취지인 것으로 보임.

한편, 구속기간 연장 관련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02조에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제203조에서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인치를 받은 때를 포함)도 10

28) 이와 관련하여, 일정 요건 하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03)」이 발의(2024. 7. 26)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임.

29) 다만, 영상녹화 의무화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제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앞서 검토한대로 수사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일로 정하되, 제205조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지방법원판사가 수사 계속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

[표 12] 안 제18조 조문대비표

제정안	「형사소송법」
제18조(구속 유지·연장의 제한) ① 수사담당자는 구속 후 사정변경에 따라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속취소의 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사담당자는 계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으면 <u>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으며</u> , 구속기간 중이라도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u>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u>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u>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u>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u>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u> ②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 제18조제2항은 “수사담당자는 계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으면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으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의 수사담당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하는바, 안 제18조제2항의 조기석방 취지와 달리 법문 해석 상 사법경찰관리도 기본적으로 구속기간 연장 신청 권한이 부여되고, 계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이는 사법경찰관에게

최초 10일의 구속기간 외에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³⁰⁾, 검사에
게만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³¹⁾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체계와 부합하
지 않는 부분임.

또한,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 연장의 타당성’(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을 지방법원판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반면,
제정안은 수사담당자에게도 ‘구속기간 연장 신청의 타당성’을 스스로 판
단하도록 하여, “계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으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제27조제2항³²⁾의 규정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입법 방식으로, 조기 석방을 위한 취지로 보임.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수사담당자가 준수할 내부규율이나 행동원칙을
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달리, 구속기간 연장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
고, 수사담당자를 연장여부 판단의 주체로 규정할 경우, 구속기간 연장
신청·불신청의 적법성 및 정당성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수사담

30) 예외적으로 「국가보안법」 제19조제1항은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
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방법원판사의 판단으로 구속기간의 연장을 10일 범
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
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31) 검사는 초동수사기관이 아니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심층 수사가 필요하기 때
문에 수사기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음.(노태악, 「주석 형
사소송법(제2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8, p.311.)

32)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7조(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① 검사는 구속기간 이내라도 수사가 마
무리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당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연장이 불허될 경우, 수사담당자의 안 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사담당자가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범죄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음. 또한, 연장 불신청의 경우에는 석방이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제정안이 수사담당자의 구속사유 소멸 판단 내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의 기준으로 제시한 ‘사정변경’이나 ‘계속수사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조기석방의 취지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달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심야조사 제한(안 제32조)

제정안 제31조는 수사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심야조사(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시간대의 조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그 예외사유로 ① 작성된 조서의 열람, ②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③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④ 피의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표 13] 안 제32조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사준칙규정
제32조(심야조사 제한) ① 수사담당자는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시간대의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심야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피의자가 요청한 경우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심야조사 제한 관련 제정안은 현행 수사준칙규정 제21조에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과 수사준칙 규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가) 수사준칙 규정은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조서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정안은 작성된 조서 열람시에는 별도의 심야조사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음.

이는 조서 열람은 피의자가 자신이 조사과정에서 진술·답변한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이후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나) 제정안은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사유로 ‘피의자의 요청’을 두면서, 그 요청에 구체적 사유나 내용 등에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수사준칙규정은 ‘이후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필요로 하며,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즉, 제정안은 수사준칙규정과 비교하여 피의자의 심야조사 요청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① 기본적으로 심야조사는 수면·휴식 등이 제한되어 피의자에게 침익적 요소가 큰 조사 방법이라는 점에서 피의자의 심야조사 요청권을 다소 넓게 인정하더라도 남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 ② 안 제31조제2항에서 심야조사 실시 결정에 수사담당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의자가 요청하였다고 반드시 심야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 수사준칙규정은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도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반면, 제정안은 이러한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였음.

심야조사의 침익적 성격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① 사건의 성질이나 죄질의 정도, 피의자의 상태 등을 감안하였을 때, 신속한 수사 진행과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심야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② 수사준칙규정도 법무부장관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전제로 심야조사를 허용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과 신속한 수사진행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효과적 행사’라는 상반되는 법익의 조화·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경우에도 수사준칙규정과 같이 제한적 범위 및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6) 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안 제39조)

안 제39조는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등 참고인 및 그 가족이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하 “피해자등”)으로부터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담당자의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①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출석·귀가 시 동행, ③ 임시숙소 제공, ④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의 신변 보호 조치를 하도록 수사담당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표 14] 안 제39조 조문대비표

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39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수사담당자는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등 참고인 및 그 가족(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출석·귀가 시 동행 3. 임시숙소 제공 4. 주거지 순찰 강화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로 정한다. 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한편, 현행법상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등 조치는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음.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범죄피해자”로 정의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함.³³⁾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등을 한 자를 “범죄신고자 등”으로 정의하고,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 당할 우려가 있

3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함.³⁴⁾

즉, 현행법은 ‘범죄피해자(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모든 범죄 유형을 대상으로 신변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진정·고소·고발인’ 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특정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에 대한 신변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함.

반면, 제정안은 피해자 뿐만아니라, 고소인·고발인 등 참고인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범죄 유형의 제한 없이 신변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바, 현행 대비 수사기관의 신변 보호 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갖게 됨.

이에 따라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해 고소인·고발인 등까지 폭넓게 보호

3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 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 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 자.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죄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4. “친족등”이란 범죄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단서 확보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수사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다만,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에 대한 신변 보호 확대는 범죄 피해의 경중에 따른 보호 필요성, 보호 조치에 수반되는 충분한 인적·재정적 여건의 확충 여부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공보에서의 인권보호(제3장)

(1) 형사사건 공개 제한(안 제43조) 및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안 제48조)

제정안 제43조는 형사사건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기관의 공보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사건 공보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제정안 제3장 제2절(공보절차)에서는 형사사건을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과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따른 공보절차를 규정함.

[표 15] 안 제43조 및 제47조, 제48조 조문대비표

제정안
제43조(형사사건의 공개 제한) 형사사건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기관의 공보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개되지 아니한다. 제47조(공소제기 전 형사사건) ① 불기소처분한 사건 등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이하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이라 한다)은 <u>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u>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보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48조(공소제기 후 형사사건) ① 수사기관은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이하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보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신상 2. 죄명과 공소사실의 요지 3. 공소제기의 일시 및 방식 4. 수사경위 및 수사상황 ③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의 시기 등 제1항에 따른 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먼저, 안 제47조는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

고(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공보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 제한을 규정한 안 제43조와 그 규정 방향이 부합함.

그러나 안 제48조는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보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어,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를 별도의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즉, 안 제48조는 법문상으로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안 제43조와 규정 방향이 상호 충돌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형사공보규정은 제정안과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은 법령 등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면서(제4조),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함으로써, 제4조와의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음.

[표 15] 형사사건 공개 제한 관련 형사공보규정 조문

형사공보규정
제4조(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 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제6조(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은 공소장 공개 및 공개 재판 등에 따라 관련 정보가 이미 공개되는 상황으로,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비해 허용되는 공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함.

따라서 제정안도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 제한 원칙을 견지하고, 안 제43조와 제48조간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사공보규정의 규정을 참고하여 안 제48조의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보할 수 있도록 법문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의 정의(안 제47조제1항)

제정안 제47조제1항은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면서,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을 “불기소처분한 사건 등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16] 안 제47조제1항 조문대비표

제정안	형사공보규정
제47조(공소제기 전 형사사건) ① 불기소처분한 사건 등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이하 “ <u>공소제기 전 형사사건</u> ”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제5조(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① <u>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u>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제정안	형사공보규정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그런데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 아직 이르지 않은 ‘공소제기 전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특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주로 공소제기 전 수사 중인 사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건 공보 과정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정안에서 원칙적으로 수사등 정보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역시 ‘공소제기 전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이 중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럼에도 제정안은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을 “불기소처분한 사건 등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법문 상 불기소처분 등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수사가 종결된 형사사건’이 주 대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용어에 대한 일반적 이해 및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 형사공보규정 제5조제2항의 입법례를 보면, 불기소처분 사건은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의 한 유형으로 본다는 별도의 조항을 둔바, 그 배경에는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의 일반적 정의에 불기소처분 사건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으로 포함시키려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형사공보규정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안 제47조제1항의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은 공소제기 전 수사·내사 중인 사건으로 정의하면서, 불기소처분 사건 등은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의 일례로 보도록 법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3)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 공보의 예외적 허용 요건(안 제47조제2항)

제정안 제47조제1항은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되, 제2항 각 호에서 공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요건을 규정함. 구체적으로, ①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이나 동종 범죄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긴급 체포 요건을 충족할 것이 명백하여 범인의 검거를 위한 정보 제공 등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③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 등을 국민에게 즉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오보·추측성 보도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피의자의 신상, 발생한 범죄피해 및 위협, 범죄피해 대응 조치, 혐의사실과 범행수단 및 증거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표 17] 안 제47조 조문대비표

제정안	형사공보규정
제47조(공소제기 전 형사사건)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보할 수 있다.</u> 1.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이나 동종 범죄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명백하여 범인의 검거를 위한 정보 제공 등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 등을 국민에게 즉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피의자의 신상 2. 발생한 범죄피해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위협의 내용 3. 범죄피해의 확산방지 및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조치의 내용 4. 혐의사실, 범행수단 및 증거물 ④ 공개 사유별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의 시기 등 제2항에 따른 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u> 1. <u>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요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u>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u>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u>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6. <u>수사에 착수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또는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u>

한편, 현행 형사공보규정 제9조제1항에서도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대한 예외적 공개 요건을 정하고 있음. 제정안과 현행 형사공보규정의 예외적 공개(공보) 요건을 비교·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가) 형사공보규정은 사건관계인³⁵⁾과 검사 등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나 추측성 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진상을 바로잡기 위해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의 공보를 허용함(규정 제9조제1항제1호). 반면, 제정안은 오보나 추측성 보도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의 공보를 허용하고 있음(안 제47조제2항제4호).

즉, 현행은 사건관계인 뿐만아니라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예외적 공보를 허용하는 반면, 제정안은 수사업무 종사자 인권 보호 목적으로는 예외적 공보를 허용하지 않음. 이는 수사업무 종사자 인권 보호를 이유로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오히려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오보·추측성 보도로부터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수사활동을 보장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점, 수사업무 종

35) 「형사공보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공보활동이 반드시 사건관계자의 인권 침해
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는 공보활
동의 허용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형사공보규정 제6조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³⁶⁾ 오보·추측성 보도로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사건관계인의 인
권 및 방어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보하도록 허용하는 방
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형사공보규정은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의 공
보를 허용함(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반면, 제정안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명백하여
범인의 검거를 위한 정보 제공 등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공
소제기 전 형사사건의 공보를 허용하고 있음(안 제47조제2항제2호).

즉, 제정안은 ‘범인 검거를 위한 정보 제공 등 국민 협조 필요성’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체포·구속영장 발부 또는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함이 명백한 범인 검거에 한하여 국민 협조를 위한 공보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예외적 공보 허용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정하려는 취지
로 보이는바,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36) 「형사공보규정」 제6조(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
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은 ‘범인 검거를 위한 정보 제공 등 국민 협조 필요성’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 명백하거나 ②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②)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³⁷⁾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임. 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 주체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이므로,³⁸⁾ 수사담당자나 수사기관이 체포·구속영장 발부가 명백한지(①)를 예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따라서 법문 중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를 “청구하거나”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7)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38)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 형사공보규정은 규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명시한 사유 외에도 제6호에서 ‘수사에 착수된 수사준칙규정 제7조³⁹⁾ 또는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제1항⁴⁰⁾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을 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반면 제정안은 별도의 하위법령 위임을 통해 공소제기 전 공보가 허용되는 사건을 규정하지 아니함.

「형법」 제126조가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형사공보규정 등에서도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행

- 39) 「수사준칙규정」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1.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2. 내란, 외환, 대공(對共),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3.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구성·가입·활동 등과 관련된 사건
 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5.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 40)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보고대상) ①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삭제 <1988. 12. 29.>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7.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8. 공안사건
 9.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10.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12.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
 13. 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배경에는, 형사공보규정 제6호의 “언론의 요청”과 “국민에게 알릴 필요”라는 사유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예외적 공보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됨. “언론의 요청” 또는 “국민에게 알릴 필요” 등의 사유는 지극히 광범위하여 거의 모든 피의사실 공표를 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이므로, 제정안의 입법과 무관하게 삭제되어야 할 조항으로 보임.⁴¹⁾

따라서, 제정안이 예외적 공보가 허용되는 사건 유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 및 「형법」상 피의사실공표금지 조항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더욱 중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종합하면, 제정안에 따라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 공개 및 공보가 가능한 사유를 안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다섯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통해 보다 강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국민의 알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제정안이 열거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더욱 필요하여 반드시 공보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겠음.

41) 이는 형사공보규정 제9조제1항제6호 사유가 타 기관의 공보규정에는 없고, 동 규정에만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을 유추할 수 있음.

라. 보칙(제4장) 및 벌칙(제5장)

(1) 국가배상의 특례(안 제62조)

제정안 제62조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공개·유출되어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되, 수사·공보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함.

[표 18] 안 제62조 조문대비표

제정안	「국가배상법」
제62조(국가배상의 특례) 국가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공개·유출되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 즉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행위’, ‘직무 집행 과정’,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타인의 손해 발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반면, 제정안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이 공개·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등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 발생 요건과는 다소 다르게 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 조항은 타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입법 방식으로, 제정안이 정한 국가배상책임 발생요건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가) 제정안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공개·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함. 제정안의 취지가 형사사건 수사·공보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가 목적임에 비추어볼 때, 제정안이 정하는 국가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내 수사 및 공보담당자’가 ‘수사 및 공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사건 관련 정보’가 공개·유출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국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제정안은 공개·유출되는 정보를 수사 혹은 사건 관련 정보로 국한하지 않고 사건관계인과 관련한 모든 개인 정보로 폭넓게 규정하는 입장이고, 「국가배상법」과 달리 정보 등 공개·유출의 주체,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개·유출 여부, 고의·과실 여부, 법령 위반 여부 등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음. 따라서 법문 해석상 주체나 직무 수행

과 무관하게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가 공개·유출되기만 하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국가배상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보임.

또한, 단서 조항에서 국가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사유인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와, 「국가배상법」 상 ‘고의·과실’ 및 ‘법령 위반’ 요건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즉, 「국가배상법」 상 국가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고의·과실이 없고,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가 제정안의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나) 이처럼 제정안은 국가배상 특례를 두면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등 공개·유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그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특례 조항을 통해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과, 이를 통해 보호하려는 사건관계인의 권익 간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과 같이 「국가배상법」과 배상 요건 등을 달리 정하는 특례 조항을 두기보다는, 그 대안으로 제정안에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즉, 수사기관 및 수사·공보담당자가 수사·공보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임.⁴²⁾

42) (유사입법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2) 형사사건 보도 등에 관한 특칙(안 제63조)

제정안 제63조는 형사사건을 보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하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특칙 사항을 규정함. 구체적으로, 형사사건의 보도와 유통은 ①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됨을 전제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제1항), ②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제2항), ③ 판결확정 전 형사사건의 보도와 유통시에는 해당 사건이 판결확정 전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공보와 사건관계인의 입장 등을 균형있게 다룸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제3항).

[표 19] 안 제63조 조문대비표

제정안
제63조(형사사건 보도 등에 관한 특칙) ① 형사사건의 보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통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됨을 전제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형사사건을 보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하는 경우 타인(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판결확정 전 형사사건의 보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통은 해당 사건이 판결확정 전의 형사사건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관점과 분량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공보와 사건관계인의 입장 등을 균형있게 다룸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조항은 사실상 형사사건을 보도하는 언론과, 정보통신망에서 정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국가의 배상 책임) 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보를 유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⁴³⁾ 등에게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

그러나, 제정안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안 제4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안 제1조), 이 법의 준수 대상은 기본적으로 수사 기관 및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보담당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용자에게까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까지 명예 훼손 및 인격권 침해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에게 사실상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은 형사사건 보도 등에 관한 특칙을 두면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별도의 제재나 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 될 수 있는바, 입법 실익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⁴⁴⁾

- 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44) 참고로, 「소년법」의 경우 제정안과 유사하게 이 법에 따라 조사·심리 중인 보호사건·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게재·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문·방송·출판물 제작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면서, 법 위반시 처벌 조항을 함께 규정함.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할 수

(3) 개인정보 유출시 처벌조항(안 제66조)

제정안 제66조는 수사·공보 담당자 및 관계자가 이 법에 따라 공개·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를 공개·유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함.

[표 20] 안 제66조 조문대비표

제정안
제66조(개인정보 유출 등) 수사담당자, 공보담당자등 또는 수사·공보관계자가 이 법에 따라 공개·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를 공개·유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률상 형벌의 규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 대상 행위, 행위 주체 및 형사처벌의 정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행정형벌의 경우 실체규정에 ‘의무규정’을 두고, 벌칙 관련 장(章)·절(節)에서 각 의무규정에 상응하는 ‘벌칙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함.⁴⁵⁾⁴⁶⁾

그런데, 제정안상 공개·유출 금지 조항은 안 제10조(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사생활 정보 등 부당 이용·유출 금지), 안 제46조(공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사생활 정보 등 부당 이용·유출 금지), 안 제47조(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 금지), 안 제51조(사건관계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45)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5, p.753, 759.

46) 일반적으로 “제○조를 위반하여 …을 한 사람(자)은 …에 처한다”라고 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행위자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함.

인 실명 사용 금지), 안 제52조(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 금지) 등으로 매우 다양함에도, 제정안의 벌칙 장(章)에서는 각 의무규정에 상응하게 개별적으로 벌칙을 규정하지 않고, 안 제66조에서 ‘수사담당자, 공보담당자등 또는 수사·공보관계자가 이 법에 따라 공개·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를 공개·유출한 때’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바,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 명확성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안 제66조의 제목을 “벌칙”으로 수정하고, 제66조 내에 각 항(項)을 신설하여 각 항 마다⁴⁷⁾ 구체적인 의무규정과 그에 상응하는 벌칙규정(법정형)을 두는 등 벌칙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47조(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의 원칙적 공개 금지)를 위반하는 것은 「형법」 제126조⁴⁸⁾의 피의사실공표죄와 구성요건이 사실상 동일한바, 벌칙 규정을 별도로 두는 실익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48

47) 또는 조(條)를 추가 신설하여 각 조마다

48)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